



시민의 의견이 제도와 정책이 되는 의정구현

의안번호

제42호

논산시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서 원 의원 외 9명
제출연월일	2023. 4. 11.

논산시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호	제42호
--------------	------

발의연월일 : 2023. 4. 11.

대표발의자 : 서 원

공동발의자 : 이상구, 서승필,
민병춘, 김남충,
이태모, 조배식,
장진호, 윤금숙,
허명숙

1. 제안이유

논산시 청소년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의회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민주시민 의식의 함양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기능 (안 제3조)
- 나. 모집 방법 (안 제5조)
- 다. 의회 의장단 구성 (안 제6조)
- 라. 상임위원회 (안 제7조)
- 마. 회의 (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
- 나. 입법예고 : 2023. 4. 11 ~ 4. 15.(5일간)

□ 조례안

논산시의회 조례 제 호

논산시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청소년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의회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민주 시민 의식의 함양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논산시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19세미만의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논산시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3. “청소년의원(이하 “의원”으로 한다)이란 논산시 청소년의회 구성원으로서 선정된 학생들을 말한다.

제3조(기능) 청소년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제안 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의원정수) 의회 의원의 수는 매 기수당 40명 이내로 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5조(모집방법) ① 의회 의원은 공개 모집하여 심사 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와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논산시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모집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 제6조(의회 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한다.
- ② 의장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되,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과반수 득표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③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2항의 방법으로 선거한다.
- ④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 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상임위원회)** ① 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의 상임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② 상임위원회는 20명 내외의 의원을 희망에 따라 배정하되 각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 ③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④ 상임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선출한다.
- ⑤ 간사는 상임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로 하계·동계 방학기간 동안 2회 개최하되,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한다.
-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 장소는 논산시의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산시의회 회의장 등 적정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임기) 의원의 임기는 위촉장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10조(지원) 의장은 의회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촉장 수여 및 의원증, 배지 등 지급
2. 의회 운영 및 회의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포상) 의장은 의회 체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자치발전을 위한 제안 등 우수한 성과를 낸 의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논산시의회 의원	서 원 의원 외 9인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